
투스텝NH종신보험
(해약환급금일부지급형, 무배당)_2501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투스텝NH종신보험(해약환급금일부지급형, 무배당)_2501

사업방법서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사업방법서 별지)

투스텝NH중신보험(해약환급금일부지급형,무배당)_2501

1. 보험종목의 명칭 및 보험형태

보험종목의 명칭	보험형태	
투스텝NH중신보험(해약환급금일부지급형,무배당)_2501	1종(해약환급금일부지급형 I)	1형(일반가입)
		2형(간편가입)
	2종(해약환급금일부지급형 II)	1형(일반가입)
		2형(간편가입)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1) 1종(해약환급금일부지급형 I)

종목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최대가입나이		납입주기
		제1납입기간	제2납입기간	남자	여자		
1형 (일반가입)	중신	5년납	3년납	2년납	75세	75세	월납
		7년납	3년납	4년납	75세	75세	
2형 (간편가입)	중신	5년납	3년납	2년납	72세	72세	월납
		7년납	3년납	4년납	72세	72세	

주) 1형(일반가입)은 만 15세부터 가입 가능하며, 2형(간편가입)은 20세부터 가입 가능함.

(2) 2종(해약환급금일부지급형 II)

종목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최대가입나이		납입주기
		제1납입기간	제2납입기간	남자	여자		
1형 (일반가입)	중신	10년납	5년납	5년납	70세	70세	월납
		12년납	6년납	6년납	68세	68세	
2형 (간편가입)	중신	10년납	5년납	5년납	70세	70세	월납
		12년납	6년납	6년납	68세	68세	

주) 1형(일반가입)은 만 15세부터 가입 가능하며, 2형(간편가입)은 20세부터 가입 가능함.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금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기본보험료

제1납입기간에는 기준보험료, 제2납입기간에는 최소보험료를 말한다.

① 기준보험료

계약을 체결할 때 제1납입기간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보험료로서,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한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초회보험료를 말한다.

② 최소보험료

제2납입기간동안 납입하는 보험료로서, 기준보험료의 20%를 말한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추가납입특약II(무배당)을 통해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말한다.

다. 중도인출 재납입보험료

(1)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하 "중도인출"이라 한다)로 「기본보험금」의 감소가 있을 경우 중도인출 재납입보험료 한도 이내에서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중도인출 재납입보험료의 계약관리비용 등은 중도인출 재납입보험료 납입 시 공제하며, 중도인출 재납입보험료는 최저 1만원 이상 납입이 가능하다. 다만, 이 계약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하고 추가로 보험료 납입 시 주계약의 중도인출 재납입보험료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 재납입보험료가 우선 납입이 되며, 나머지 금액은 추가납입보험료로 납입이 된다.

(2) 중도인출 재납입보험료의 한도는 각 납입시점까지의 중도인출금액의 합계에서 이미 납입한 중도인출 재납입보험료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중도인출 재납입보험료를 중도인출금액의 합계만큼 납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적립액이 예정적립액보다 작을 경우 「예정적립액-계약자적립액」만큼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다만, 중도인출 재납입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산 납입 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100% (계약자적립액과 추가납입특약II(무배당)의 추가납입적립액의 인출이 있을 경우 합산한 금액)로 한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보험료의 선납은 당월분을 제외하고 최대 11개월분까지 가능하며, 3개월분 이상의 기준보험료 및 최소보험료가 선납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체결시점의 평균 공시이율(이하 “평균공시이율”이라 한다)」로 할인하여 이를 영수한다. 다만, 선납되는 기간이 제1납입기간과 제2납입기간에 걸쳐있는 경우 기준보험료와 최소보험료를 구분하여 별도로 선납 가능하다.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가. 약관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 연체 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다만,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지난 후에는 연체된 월대체보험료 이상의 금액)에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부활(효력회복) 청약일까지 총당되지 못한 월대체보험료를 공제한다.

(1) 연체보험료

● 1종(해약환급금일부지급형 I)

① 「보험료 납입기간+3년」 시점 계약해당일 전일이전(이하 “「보험료 납입기간+3년」 미만”이라 한다)에 해지된 경우

: 부활(효력회복) 청약일까지 미납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② 「보험료 납입기간+3년」 시점 계약해당일 이후(이하 “「보험료 납입기간+3년」 이후”라 한다) 해지된 경우

: 부활(효력회복) 청약일까지 총당되지 못한 월대체보험료 횟수 ×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해당액

● 2종(해약환급금일부지급형 II)

①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해지된 경우

: 부활(효력회복) 청약일까지 미납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② 보험료 납입기간이 지난 후 해지된 경우

: 부활(효력회복) 청약일까지 총당되지 못한 월대체보험료 횟수 ×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해당액

(2) 연체이자

연체보험료를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연체이율로 계산한 이자

나. ‘가’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한도(다만, 1회 납입한도 적용 제외)에 의하여 연체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가’에서 정한 연체보험료가 총당되지 못한 월대체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하지 않는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 체결 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한다.

10.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하고 1종(해약환급금일부지급형 I)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 3년」 이후, 2종(해약환급금일부지급형 II)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이 지난 후부터 보험연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1회당 인출신청시점 해약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 범위 이내에서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다만, 이 계약의 추가납입특약 II(무배당)에 의한 추가납입적립액(추가납입적립액에 의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금액)에서 우선 인출된다.

나. 인출 후 계약자적립액은 총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20% 이상이 되어야 하며, 각 인출시점까지의 중도인출금액의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다만, 특약보험료는 제외)와 중도인출 재납입보험료의 합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중도인출금액은 최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계약자적립액 인출시 수수료는 없다.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순수보장

형보험 등 보험 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나. 계약자는 '가' 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다. 회사는 약관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다.

라.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13. 월대체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하고 1종(해약환급금일부지급형 I)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 3년」 이후, 2종(해약환급금일부지급형 II)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이 지난 후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과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제외)의 합계액을 말한다. 월대체보험료는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하며,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은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할 때에 공제한다. 다만, 해당월까지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합계액 이상을 납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약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하지 못하는 계약 중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잔액이 없고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한다.

나. 중도인출 재납입보험료의 계약관리비용은 보험료 납입시에 납입한 중도인출 재납입보험료에서 공제한다.

다. 회사는 해약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가 공제됨을 청약서에 기재하여 계약자의 동의를 얻는다.

14-1.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에 관한 사항 (1종(해약환급금일부지급형 I)의 경우)

가. 「보험료 납입기간 + 3년」 미만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

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으로 정한다.

나. 「보험료 납입기간 + 3년」 이후
해약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월계약해당일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으로 정한다.

단, 「보험료 납입기간 + 3년」 이후에 해약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하지 못하는 계약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약관 제28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을 하지 않는다.

- (1) 해당월까지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합계액 이상을 납입한 경우
- (2)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잔액이 없는 경우
- (3)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을 하지 않은 경우
- (4) 계약자적립액에서 월대체보험료 충당이 가능한 경우

14-2.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에 관한 사항 (2종(해약환급금일부지급형 II)의 경우)

가.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으로 정한다.

나. 보험료 납입기간이 지난 후

해약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월계약해당일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으로 정한다.
단, 보험료 납입기간이 지난 후에 해약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하지 못하는 계약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약관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을 하지 않는다.

- (1) 해당월까지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합계액 이상을 납입한 경우

- (2)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잔액이 없는 경우
- (3)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을 하지 않은 경우
- (4) 계약자적립액에서 월대체보험료 충당이 가능한 경우

15-1. 사망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 (1종(해약환급금일부지급형 I)의 경우)

- 가. 「보험료 납입기간 + 3년」 미만은 「기본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가장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기간 + 3년」 이후부터 「기본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그리고 「직전 월계약해당일 계약자적립액의 101%」 중 가장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 나. ‘가’에서 「기본보험금」은 약관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단, 「보험료 납입기간 + 3년」 이후에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인출전 기본보험금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하며, 중도인출 재납입보험료만큼 더한다.
- 다. ‘가’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라 함은 계약자가 납입한 「5. 보험료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기본보험료의 합계(단, 특약보험료는 제외)를 말하며,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기본보험료 및 중도인출 재납입보험료의 합계(단, 특약보험료는 제외)에서 중도인출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라. ‘가’에서 「직전 월계약해당일 계약자적립액의 101%」는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액으로 계산하며, 직전 월계약해당일 이후에 중도인출 재납입보험료의 납입 또는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 해당금액을 가감한다.

15-2. 사망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 (2종(해약환급금일부지급형 II)의 경우)

- 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은 「기본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가장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지난 후부터 「기본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그리고 「직전 월계약해당일 계약자적립액의 101%」 중 가장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 나. ‘가’에서 「기본보험금」은 약관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단,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인출전 기본보험금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하며, 중도인출 재납입보험료만큼 더한다.
- 다. ‘가’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라 함은 계약자가 납입한 「5. 보험료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기본보험료의 합계(단, 특약보험료는 제외)를 말하며,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기본보험료 및 중도인출 재납입보험료의 합계(단, 특약보험료는 제외)에서 중도인출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라. ‘가’에서 「직전 월계약해당일 계약자적립액의 101%」는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액으로 계산하며, 직전 월계약해당일 이후에 중도인출 재납입보험료의 납입 또는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 해당금액을 가감한다.

16-1. 해약환급금일부지급형 I 에 관한 사항

- 가. “해약환급금일부지급형 I”은 해지율을 적용하는 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 3년」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계약이 해지될 경우 “표준형”보다 해약환급금이 적은 대신 낮은 보험료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 나.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은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다. 보험료 납입기간 완료일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 3년」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해지될 경우 ‘주계약 총납입 기본보험료’에 아래 ‘해약지급률과 누적조정률의 합계’를 곱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한다.

1) 해약지급률 및 조정률

납입기간	해약지급률	조정률
5년납	67%	-0.87%
7년납	67%	1.71%

2) 누적조정률 :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경과월수 × 조정률 / 12
(단, 경과월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 경과월수는 “0”으로 한다.)

3) ‘주계약 총납입 기본보험료’
: 주계약 기준보험료 × 12 × 보험료 제1납입기간(년수)
+ 주계약 최소보험료(기준보험료의 20%) × 12 × 보험료 제2납입기간(년수)

- 라. ‘다’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납입하기로 한

‘주계약 총납입 기본보험료 ‘의 납입이 완료되지 않고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은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 납입 기간이 종료되고 납입하기로 한 ‘주계약 총납입 기본보험료의 ‘ 납입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다’ 와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마. ‘나’ 내지 ‘라’ 에서의 해약환급금은 ‘납입완료보너스’, ‘장기유지보너스’, ‘납입완료보너스·장기유지보너스 적립액’ 및 ‘납입완료보너스 발생후 적립액’ 을 제외하고 계산한 금액입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에 ‘납입완료보너스 발생 후 적립액’ 이 있는 경우 ‘납입완료보너스 발생 후 적립액’ 을 더하여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바. ‘나’ 및 ‘라’ 에서 “해약환급금일부지급형 I”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형” 의 해약환급금은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하며, “표준형” 은 판매하지 않으며 비교 안내만을 위한 상품이다.

사. “해약환급금일부지급형 I” 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동일한 보장 내용의 “표준형” 과 비교하여 안내하며, 비교 시 “표준형” 보다 해약환급금이 적은 구간이 전체 구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한다. 향후 관련 법령 및 규정 변경 등 필요시 1년 미만 구간이 추가될 수 있다.

아. 회사는 “해약환급금일부지급형 I” 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I”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별첨 3]에 따른 별도의 확인서를 받는다.

자. [별첨 3]의 확인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6-2. 해약환급금일부지급형 II 에 관한 사항

가. “해약환급금일부지급형 II” 은 해지율을 적용하는 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은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해약환급금일부지급형 II” 은 “표준형” 보다 해약환급금이 적은 대신 낮은 보험료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다. ‘가’ 에서 “해약환급금일부지급형 II”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형” 의 해약환급금은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하며, “표준형” 은 판매하지 않으며 비교 안내만을 위한 상품이다.

라. “해약환급금일부지급형 II” 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동일한 보장 내용의 “표준형” 과 비교하여 안내하며, 비교 시 “표준형” 보다 해약환급금이 적은 구간이 전체 구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한다. 향후 관련 법령 및 규정 변경 등 필요시 1년 미만 구간이 추가될 수 있다.

마. 회사는 “해약환급금일부지급형 II” 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II”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별첨 4]에 따른 별도의 확인서를 받는다.

바. [별첨 4]의 확인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7. 노후자금설계전환특약(무배당)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전환전 계약의 계약일부 10년(다만, 계약자가 사망보장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전 계약의 계약일부 5년)이 경과된 계약에 대해 노후자금설계전환특약(무배당)으로의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의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나. 노후자금설계전환특약(무배당)의 피보험자는 전환전 계약의 피보험자에 한하며, 전환 신청 당시 피보험자의 나이는 45세 이상 80세 이하(전환전 주계약 가입연령이 35세 이하인 경우 45세 이상 70세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이 불가하다.

- (1) 생활자금 지급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 (2) 전환전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12년 이상인 경우
- (3) 전환시점의 전환전 계약의 해약환급금으로 해당 특약의 ‘산출방법서’ 에 따라 생활자금 또는 사망보험금이 ‘0’ 이하로 계산되는 경우

다. 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노후자금설계전환특약(무배당)으로 전환된 경우 전환전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

라. 회사는 계약자가 노후자금설계전환특약(무배당)으로의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전환

전 계약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노후자금(행복자금, 생활자금 등)을 지급한다.

마. 노후자금설계전환특약(무배당)은 전환전 계약 가입시점의 해당 특약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를 적용한다.

**18-1. 납입완료보너스 및 장기유지보너스에 관한 사항
(1종(해약환급금일부지급형 I)의 경우)**

가. 회사는 기본보험료 총액 납입이 완료된 계약에 대하여 ‘납입완료보너스 발생시점’에 아래의 ‘납입완료보너스’를 ‘납입완료보너스 발생후 적립액’에 가산하며,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시점’에 아래의 ‘장기유지보너스’를 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한다. 또한, 「보험료 납입기간 + 3년」시점 계약해당일에 ‘납입완료보너스 발생 후 적립액’은 계약자적립액으로 이전한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될 경우에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1) 납입기간이 5년납인 경우

구분	보너스 발생시점	보너스 금액
납입완료보너스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시점	주계약 총납입 기본보험료 × 32.9%
장기유지보너스	10년 경과시점	주계약 총납입 기본보험료 × 2.2%

(2) 납입기간이 7년납인 경우

구분	보너스 발생시점	보너스 금액
납입완료보너스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시점	주계약 총납입 기본보험료 × 33.0%
장기유지보너스	10년 경과시점	주계약 총납입 기본보험료 × 1.5%

※ 주계약 총납입 기본보험료
 : 주계약 기준보험료 × 12 × 보험료 제1납입기간(년수)
 + 주계약 최소보험료(기준보험료의 20%) × 12 × 보험료 제2납입기간(년수)

나. ‘납입완료보너스·장기유지보너스 적립액’이란 납입완료보너스의 경우에는 ‘납입완료보너스 발생후 적립액’에 가산하기 전까지, 장기유지보너스의 경우에는 장기유지보너스를 ‘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하기 전까지 별도로 적립하는 금액으로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 납입완료보너스 발생 후 적립액이란 납입완료보너스가 발생한 후 「보험료 납입기간 + 3년」이후에 ‘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하기 전까지 계약자적립액과 별도로 보험료

납입기간 + 3년」 미만까지 적립하는 금액으로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라. 회사는 ‘납입완료보너스 발생시점’ 또는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시점’ 전에 피보험자에게 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 기준으로 계산한 ‘납입완료보너스·장기유지보너스 적립액’을 사망보험금과 함께 지급한다.

18-2. 납입완료보너스에 관한 사항 (2종(해약환급금일부지급형 II)의 경우)

가. 회사는 기본보험료 총액 납입이 완료된 계약에 대하여 다음의 납입완료보너스를 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한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될 경우에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납입완료보너스 가산시점	납입완료보너스 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시점	주계약 총납입 기본보험료 × 20.0%

※ 주계약 총납입 기본보험료
 - 주계약 기준보험료 × 12 × 보험료 제1납입기간(년수)
 + 주계약 최소보험료(기준보험료의 20%) × 12 × 보험료 제2납입기간(년수)

나. 납입완료보너스적립액이란 납입완료보너스를 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하기 전까지 계약자적립액과 별도로 적립하는 금액으로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 회사는 납입완료보너스를 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하기 이전에 피보험자에게 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 기준으로 계산한 납입완료보너스적립액을 사망보험금과 함께 지급한다.

19. 부가서비스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가 정한 서비스 부가 기준을 충족한 계약에 한하여 회사는 장래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나. 장래지원서비스는 회사의 제휴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제휴업체가 부담한다.

다. 다만, 본 서비스는 대내외환경 변화로 인해 향후 서비스 내용 및 제공방법이 변경되거나 중지 될 수 있다.

20. 기타사항

가. 이 계약의 2형(간편가입)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유병력자 또는 고연령자 등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한다.

- (1) 간편심사란 의적결함 및 연령 제한으로 인하여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유병력자나 고연령자 등의 계약심사 및 건강검진의 부담을 줄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표준체에 비하여 간소화된 “[별첨 2]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활용하여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함을 의미한다. 간소화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이외의 항목을 사용하여 계약심사를 하지 않는다.
- (2) 피보험자가 표준체에 해당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 항목을 통하여 보험가입 여부에 대한 의적심사를 거쳐 가입 가능한 일반보험이 존재하는 경우, 회사는 간편심사 상품과 일반보험의 보험료 수준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이에 대한 계약자 확인 “[별첨 1] 간편심사 상품에 대한 계약자 확인”을 받는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경우 “[별첨 1] 간편심사 상품에 대한 계약자 확인”에 대하여 음성녹음으로 대신한다. 비교 대상 상품은 회사에서 판매중인 유사한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다.
- (3) 회사는 이 계약에 가입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 일반심사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일반계약심사를 통하여 일반심사보험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본 계약의 보험금이 이미 지급되거나 청구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4) ‘(3)’ 항에 의하여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준다.
- (5) 회사는 일반심사보험의 보장성보험에 표준체로 가입한 피보험자가 3개월 이내에 이 계약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일반계약심사를 통하여 일반심사보험을 가입하도록 안내하며 이 계약의 가입을 제한한다.

나. 조건부인수를 위한 부가특약 (1형(일반가입)에 한함)
특정 신체부위 · 질병보장제한부 인수특약, 특별조건부특약

다. 보험가입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보험가입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납입주기 변경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의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납입주기 변경은 불가능하다.

마. 연금전환특약Ⅳ(무배당)의 적용
연금전환특약Ⅳ(무배당)의 부가로 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 계약을 연금전환특약Ⅳ(무배당)으로 전환할 수 있다.
- (2) ‘(1)’ 에도 불구하고 계약일부터 10년 미만 경과된 계약(다만,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은 제외)은 전환할 수 없다.
- (3) 연금전환특약Ⅳ(무배당)의 피보험자는 전환 전 주계약의 피보험자에 한하며, 연금전환 신청 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이상 80세 이하인 경우 전환할 수 있고 연금개시나이는 30세 이상 80세 이하여야 한다.
- (4) 전환후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해서 계산하며, 주계약 가입 시점 연금전환특약Ⅳ(무배당)의 약관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 (5) 연금전환특약Ⅳ(무배당)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일이 아닌 주계약의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10년 이내 연단위 복리 1.0%, 10년 초과에는 연단위 복리 0.5%로 한다.
- (6)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 및 조기집중형(개인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당시 회사의 무배당 경험 개인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무배당 경험 개인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회사는 연금개시전까지 연금액 변동내역 등을 안내한다.

바. 양육연금전환특약(무배당)의 적용
전환시의 양육연금전환특약(무배당)의 사업방법서, 약관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사. 추가납입특약Ⅱ(무배당)의 적용
추가납입보험료 납입 시 추가납입특약Ⅱ(무배당)의 사업방법서, 약관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아. 계약인수에 관한 사항
보험기간, 납입주기, 보험료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보험가입금액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자.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의 판매채널은 범용이며,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보험업법 제91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에서 정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중 「농업협동조

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에 한한다.

차. 상품명칭에 관한 사항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채널(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카. 스마트페이 납입방식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은 보험료 납입구간을 제1납입기간 및 제2납입기간으로 구분하여 제1납입기간 더 높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식(이하 “스마트페이 납입방식”이라 한다)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며, 스마트페이 납입방식은 아래 내용을 적용한다.

- (1) 회사는 스마트페이 납입방식을 적용한 상품에 대해 보험료 납입기간 중 평준한 보험료를 납입하는 상품 대비 1차년도 수수료를 높게 설정하지 않는다.
- (2) 회사는 스마트페이 납입방식을 적용한 상품의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평준한 보험료를 납입하는 상품 대비 높게 설정하지 않는다.
- (3)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스마트페이 납입방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안내한다.

타. 사망보험금 지급의 특례조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 중에서 많은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별첨 1]

간편심사 상품에 대한 계약자 확인

1. 이 상품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유병력자 또는 연령제한 등 일반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이 상품은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심사보험보다 보험료가 다소 높습니다.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심사를 할 경우 이 보험보다 저렴한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심사보험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반심사보험과의 보험료 비교(예시)

상품구분	간편심사보험	일반심사보험																								
상품명	투스텨NH중신보험(해약환급금일부지급형,무배당)_2501 1종(해약환급금일부지급형 I) 2형(간편가입)	투스텨NH중신보험(해약환급금일부지급형,무배당)_2501 1종(해약환급금일부지급형 I) 1형(일반가입)																								
보장내용 (가입금액 1천만원 기준)	[「보험료 납입기간 + 3년」 시점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 사망시 다음 중 큰 금액을 지급 - 기본보험금 -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 3년」 시점 계약해당일 이후] 사망시 다음 중 큰 금액을 지급 - 기본보험금 -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액 × 101% -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 3년」 시점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 사망시 다음 중 큰 금액을 지급 - 기본보험금 -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 3년」 시점 계약해당일 이후] 사망시 다음 중 큰 금액을 지급 - 기본보험금 -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액 × 101% -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승낙 여부	일반 상품 대비 질문항목(고지)을 간소화하여 인수기준을 완화하여, 지병이나 기왕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보장상태 및 직업에 따라서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1종(해약환급금일부지급형 I), 2형(간편가입), 5년납, 월납	기준 :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1종(해약환급금일부지급형 I), 1형(일반가입), 5년납, 월납																								
보험료 예시	<table border="1"> <thead> <tr> <th>나이</th> <th>남자</th> <th>여자</th> </tr> </thead> <tbody> <tr> <td>30세</td> <td>□□□원</td> <td>□□□원</td> </tr> <tr> <td>40세</td> <td>□□□원</td> <td>□□□원</td> </tr> <tr> <td>50세</td> <td>□□□원</td> <td>□□□원</td> </tr> </tbody> </table>	나이	남자	여자	30세	□□□원	□□□원	40세	□□□원	□□□원	50세	□□□원	□□□원	<table border="1"> <thead> <tr> <th>나이</th> <th>남자</th> <th>여자</th> </tr> </thead> <tbody> <tr> <td>30세</td> <td>△△△원</td> <td>△△△원</td> </tr> <tr> <td>40세</td> <td>△△△원</td> <td>△△△원</td> </tr> <tr> <td>50세</td> <td>△△△원</td> <td>△△△원</td> </tr> </tbody> </table>	나이	남자	여자	30세	△△△원	△△△원	40세	△△△원	△△△원	50세	△△△원	△△△원
나이	남자	여자																								
30세	□□□원	□□□원																								
40세	□□□원	□□□원																								
50세	□□□원	□□□원																								
나이	남자	여자																								
30세	△△△원	△△△원																								
40세	△△△원	△△△원																								
50세	△△△원	△△△원																								

※ 비교 대상 상품은 회사에서 판매중인 유사한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음

※ 부가 특약 변경 시 해당사항 반영

위 내용에 대하여 모집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보험계약자는 설명 받은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아래 **굵고 크게 밑줄 친 내용에** 보험설계사 및 계약자가 직접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자 확인]

보험설계사 _____은(는) 위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_____에게 설명하였습니다.

20__년__월__일 보험설계사 _____(인/서명)

[보험계약자 확인]

보험설계사 _____(으)로부터 위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20__년__월__일 계약자 _____(인/서명)

[별첨 2]

간편심사 상품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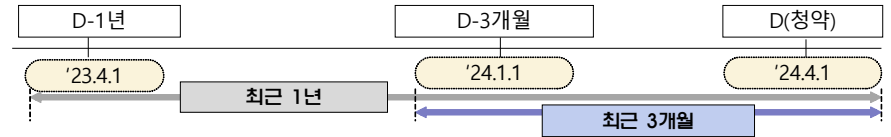
피보험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심사하고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아래 질문들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래 질문들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질문 1번~6번에 대하여 알린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이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사항」 :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반면,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 청약서에서 ‘최근 ○개월 이내(△년 이내)’는 청약일의 ○개월 전일(△년 전일)부터 청약일까지를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청약일이 4월 1일인 경우 ‘최근 3개월 이내’는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3]

“해약환급금일부지급형 I 상품 가입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 서식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서 아래
[필수비교 확인사항]은 계약 체결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필수비교 확인사항]

※ 기준: 1종(해약환급금일부지급형 I), 성별 ○○세, ○○년납, 월납,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원, 특약 제외

■ 납입보험료 비교

(단위: 원)

구분	해약환급금일부지급형 I	표준형
보험료		

■ 해약환급금 및 환급률 비교

(단위: 만원)

경과기간	해약환급금일부지급형 I			표준형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2년						
3년						
○○년						
○○년						
○○년						
○○년						
○○년						

※ 상기 환급률은 경과기간 동안 이미 납입한 보험료 대비 환급률입니다.

※ 아래 옅고 밑줄 친 내용에 보험계약자가 직접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 _____은(는) 위 내용에 대해 비교·확인 하였습니다.

본인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표준형 대비 50%, 보험료 납입기간 완료일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 3년」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주계약 총납입 기본보험료에 ‘해약지급률과 누적조정률의 합계’를 곱한 금액인 해약환급금일부지급형 I을 선택하였으며 저축목적으로 가입할 경우 다른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기 비교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모집자 확인]

보험설계사 _____은(는) 위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_____에게 설명하였습니다.

20__년__월__일 보험설계사 _____ (인/서명)

[보험계약자 확인]

보험설계사 _____(으)로부터 위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20__년__월__일 보험계약자 _____ (인/서명)

친권자 _____ (인/서명)

친권자 _____ (인/서명)

[별첨 4]

“해약환급금일부지급형 II 상품 가입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 서식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서 아래
[필수비교 확인사항]은 계약 체결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필수비교 확인사항]

※ 기준: 2종(해약환급금일부지급형 II), 성별 ○○세, ○○년남, 월납,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원, 특약 제외

■ 납입보험료 비교

(단위: 원)

구분	해약환급금일부지급형 II	표준형
보험료		

■ 해약환급금 및 환급률 비교

(단위: 만원)

경과기간	해약환급금일부지급형 II			표준형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2년						
3년						
○○년						
○○년						
○○년						
○○년						
○○년						

※ 상기 환급률은 경과기간 동안 이미 납입한 보험료 대비 환급률입니다.

※ 아래 옅고 밑줄 친 내용에 보험계약자가 직접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 _____은(는) 위 내용에 대해 비교·확인 하였습니다.
- 본인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표준형 대비 50%인 해약환급금일부지급형 II를 선택하였으며 저축목적으로 가입할 경우 다른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상기 비교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모집자 확인]

보험설계사 _____은(는) 위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_____에게 설명하였습니다.

20__년__월__일 보험설계사 _____ (인/서명)

[보험계약자 확인]

보험설계사 _____(으)로부터 위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20__년__월__일 보험계약자 _____ (인/서명)

친권자 _____ (인/서명)

친권자 _____ (인/서명)